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9. 10. 01

개정 : 2015. 01. 21

개정 : 2017. 04. 12

개정 : 2018. 07.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략연이 주관하는 연구사업(각종 보고서 작성,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각종 보고서 발간 등)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연구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 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불법 부당행위 등을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여타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불법·부당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자의 연구윤리

제4조(연구자의 부정행위)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전 과정에서 위조·

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불법 부당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공동저자의 표기) 공동저자가 있는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할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정해진 저자 표기를 해야 한다.

제7조(중복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여타 학술지에 중복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8조(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되어 있으나, 상식화되지 않은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명확하게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9조(역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략연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 연구실 실장, 연구지원실장, 국문・영문지 편집장 및 간행평가위원장 등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연구지원실장이 간사 임무를 수행한다.

제 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제12조(제보 및 접수)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제보는 전략연에 실명으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인 경우에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위반내용과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없는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심의)

① 제보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즉시 진상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보에 직접 관련되어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내용을 심의하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제14조(제재 조치)

① 위원회는 전략연 연구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수상 취소,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을 경우 인사복무규칙 제60조 제5항에 의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상이 취소될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은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③ 논문 무효처리 시 원고료를 회수한다.

④ 제보내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사실로 판명되거나, 비방, 음해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1회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속히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허위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기록의 보관)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전략연에서 보관하며, 조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

제18조(시행세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위원회는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